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남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20

발의연월일: 2025. 1. 17.

발 의 자:김남희・김 윤・장종태

임미애 · 송옥주 · 김우영

윤후덕 · 용혜인 · 이연희

남인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음.

그런데 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생등급제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제도와 중복되어 소비자들에 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.

이에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점 위생 등급제의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또한,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이 출입·검사·수거 면제와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에도 현재 2년으로는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이를 3년으로 확 대하려는 것임(안 제47조 및 제47조의2).

법률 제 호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를 삭제한다.

제47조의2제5항 본문 중 "2년"을 "3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7조의 개정 규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47조의2제5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생등급 지정을 받거나 유효기간이 연 장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(모범업소의 지정등) ① 특	<u><삭 제></u>
<u>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</u>	
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총리령	
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	
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	
한 식품접객업소(공유주방에서	
조리 • 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	
다) 또는 집단급식소를 모범업	
소로 지정할 수 있다.	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	
<u>수・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</u>	
정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	
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	
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	
에 따른 출입·검사·수거 등을	
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, 제	
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	
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	
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	
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	
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	
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	
<u>할 수 있다.</u>	
③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	

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47조의2(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등급 지정 등)

- ① ~ ④ (생략)
- ⑤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 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<u>2년</u>으로 한다. 다만,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⑥ ~ ① (생략)

제47조의2(식품접객업소의	위생
등급 지정 등)	
① ~ ④ (현행과 같음)	
⑤	
	<u> 3년</u>

⑥ ~ ① (현행과 같음)